

"너의"의 풀린답이 기술한국 단비된다"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우100-191 서울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 전화 (02) 775-8231 / 전송 771-0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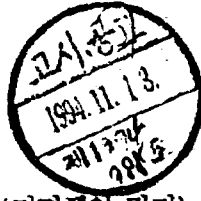
문서번호 시설67510- 787

시행일자 1994.11.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본 부 장	
보존	-	YK	
시설관리국장	공석		
시설 부 장	공석	법무담당관	총무부장
설계 1 과장	공석	시설계획부장	공공사업부장
기안	김 정 래	기획홍보과장	청리과장
		시설1과장	협조

제목 기술 용역 (전면책임 감리) 시행 및 공고

1.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가. 용역명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예산과목 :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공사관리, 공사관리, 시설부대비

다. 용역시행방법 : 용역사업 수행능력 사전심사(P.Q)에 의하여 3개업체를 선정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여 가격경쟁으로 최종업체 선정 (단, 신청자가 3인 이하의 경우는 가격경쟁으로 최종업체 선정)

라.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마. 공고방법 : 신문공고

바. 공고내용 : 따로붙임

따로붙임 1) 신문공고 (안) 1 부.

2) 전면책임감리용역 시행계획 1 부. 끝.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

(제2안)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공보2담당관

제목 신문계제 의뢰

1. 우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용역 수행참여 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안)을 신문계제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전면책임 감리 용역 수행 참여 신청서 제출안내 공고 (안)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

080

2-2

29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전면책임 감리용역 수행참여 신청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전면책임 감리용역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전면책임 감리용역수행 참여신청서 제출안내 및 세부심사 기준 등의 열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1. 용역의 명칭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
2. 참가자격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 전문회사
3. 용역수행 참여등록 및 신청서 제출
 - 가. 세부 심사기준 등 열람 : 1994년 11월 22일 ~ 11월 25일 (17:00)시
 - 나. 신청서 교부 및 등록 : 1994년 11월 26일 ~ 11월 30일 (17:00)시
 - 다. 신청서 제출 : 1994년 12월 1일 ~ 12월 3일 (13:00)시
 - 라. 세부 심사기준 등 열람, 신청서 교부 등록 및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시설부
4. 계약방법
 - 가. 건설기술관리법 (용역사업 사전심사 평가방법)에 의한 상위 3개 업체 선정
 - 나. 입찰일시 : 선정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
5. 기타사항
 - 가.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규정 (용역사업 사전심사 평가방법)에 의하여 심사하여 입찰대상업체를 선정 합니다.
 - 나. 신청서 및 과업지시서 교부 및 접수는 업체 대표자가 인장지참 직접수령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등재권 임원 (이사 또는 감사)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시설부(750-8576)로 문의 바랍니다.

전면책임감리용역 시행계획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1994. 12.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082

어

전면책임 감리용역 발주계획서

1. 책임감리 대상공사

가. 공사명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나. 위치 :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 (상계자원회수시설 부지내)

다. 공사개요

-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 7,143.72㎡
- 주요시설 :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독서실, 탁아소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라. 사업비

구분	사업비	부자계획				비고
		'93년	'94년	'95년	'96년	
공사비	8,060		1,820	4,000	2,240	
감리비	360		117	142	101	

마. 공사기간 : '94. 12 ~ '96. 6 (19개월)

바. 사업효과

-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위한 여가시설 제공
-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함양

083

2

82

2. 전면책임감리용역 발주계획

가. 용역개요

- 1) 용역명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 2) 용역비 : 360 백만원
- 3) 용역기간 : '94. 12 ~ '96. 6 (19개월)

나. 전면책임감리용역의 필요성

1) 사업의 목적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제반시방서 및 사양서등 규정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 공정관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함.

2)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다. 용역의 타당성

1) 과업의 기본방향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실시

2) 과업의 범위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와 건설부 제정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의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3) 과업지시 세부사항 : 별첨

라. 발주방식 및 감리단 구성

- 1) 발주방법 : 용역사업 수행능력 사전심사(P.Q)에 의하여 선정된 3개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 부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2호

2) 감리용역비 적용방식

- 정액정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감리용역비에 의거 감리원을 구성하고 실제 투입된 감리원 수에 따라 정산

3)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 (감리대상 공사가 장기계속 계약공사로서 공사 기간에 맞춰 전면책임감리 용역도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

4) 감리단 구성

구 분	근 무 기 간	근 무 내 용	비 고
고급 기술자	19 인 · 월	현 장 상 근	
중급 기술자	14 인 · 월	현 장 상 근	
초급 기술자	33 인 · 월	현 장 상 근	

마. 참가대상업체

- 1) 감리전문회사로서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바. 참가제외업체

- 1) 당공사를 수급받은 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호 3항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사. 전면책임감리 계약 추진일정

추진업무	'94. 11월				'94. 12월						비 고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심사기준 등 열람			—									
신청서교부 및 등록				—								
신청서 접수					—							
평가자료에 의거 사전심사						—						
입찰 및 계약							—					

- 첨 부 1.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평가표 1부.
2. 배점산출기준 1부
3.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참여 신청서 1부.
4.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참여 신청안내 및 신청서 작성지침 1부.
5. 과업지시서(안) 1부.
6. 감리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7. 내역서 및 책임감리비 산출내역 1부. 끝

086

f

8

1.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평가표

087

6

86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 점 범 위	평 가 방 법
1. 참여기술자	- 자격증 및 해당분야 경력	60 (40)	- 절대평가 · 상주감리원(30) · 비상주감리원(10)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해당자격분야)	(20)	- 상대평가
2. 유사용역 사업 수행실적		10	- 상대평가 ·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3. 신용도	-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10 (5)	- 절대평가 · 최근 3년간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 없으면 (5점), 6개월미만 (2점), 6개월이상 (0점)
	- 재정상태 건실도	(5)	- 상대평가 ·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높은순으로 점수부여
4. 업무량과 여유		5	- 상대평가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한 나머지 과업참여기간 및 건수
5. 전차용역과 관련	- 전차용역업자	15 (10)	- 절대평가 · 전차용역시행후 : 3년 이내 (100%), 3~5년 이내 (70%), 5~10년 이내 (50%)
	- 전차용역 사업책임 기술자	(5)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1. 자격		①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 자격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평가중단		
			<input type="checkbox"/> 보유함	<input type="checkbox"/> 평가계속		
		② 예산회계법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입찰참가 제한 기간중임	<input type="checkbox"/> 평가중단		
			<input type="checkbox"/> 입찰참가 기간중이 아님	<input type="checkbox"/> 평가계속		
		③ 당해용역사업에 참여예정인 책임감리원의 기술 자격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input type="checkbox"/> 평가중단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평가계속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점	평가결과		
2. 참여 기술자	가. 자격증 및 해당분야 경력	1) 사업책임기술자 (상 주)	○ 경력기간에 따라 - 15년이상 (12) - 10년이상 (11) - 5년이상 (10) - 5년이하 (9)	(12)		
		2) 분야별 기술자	① 중급기술자 (상 주)	○ 경력기간에 따라 - 12년이상 (10) - 8년이상 (9) - 4년이상 (8) - 5년이하 (7)	(10)	
			② 초급기술자 (상 주)	○ 경력기간에 따라 - 10년이상 (8) - 8년이상 (7) - 5년이상 (6) - 3년이상 (5) - 3년이하 (4)	(8)	
			소 계		(30)	
		3) 특급기술자 (비상주)	○ 경력기간에 따라 - 21년이상 (10) - 14년이상 (8.9) - 7년이상 (7.7) - 7년이하 (6.5)	(10)		
		소 계		(10)		
		소 계			(40)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점	평가결과
2. 참여 기술자	나. 해당 분야용역 참여실적 (참여기간은 많은로가 수평)	1) 사업책임기술자 (상 주)	○ 상위 10% 이내 (8) ○ 상위 11%~30% (7.5) ○ 상위 31%~70% (7) ○ 상위 71%~90% (6.5) ○ 상위 91%~100% (6)	(8)	
		2) ① 중급기술자 (상 주)	○ 상위 10% 이내 (7) ○ 상위 11%~30% (6.5) ○ 상위 31%~70% (6) ○ 상위 71%~90% (5.5) ○ 상위 91%~100% (5)	(7)	
	② 초급기술자 (상 주)	○ 상위 10% 이내 (5) ○ 상위 11%~30% (4.5) ○ 상위 31%~70% (4) ○ 상위 71%~90% (3.5) ○ 상위 91%~100% (3)	(5)		
	소 계			(20)	
소 계				(60)	
3.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		- 신청인의 최근3년 간 용역수행 실적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분야)	○ 상위 10% 이내 (10) ○ 상위 11%~30% (9) ○ 상위 31%~70% (8) ○ 상위 71%~90% (7) ○ 상위 91%~100% (6)	(10)	
4. 신 용도	가. 부정당 지정 기간	- 최근 3년간 예산 회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 되어 입찰참가제한 을 받은 기간	○ 없으면 (5) ○ 6개월미만 (2) ○ 6개월이상 (0)	(5)	
	나. 재정상 태 건설도	- 자기자본 비율 (최근 3년 평균)	○ 상위 10% 이내 (2.5) ○ 상위 11%~30% (2.25) ○ 상위 31%~70% (2.0) ○ 상위 71%~90% (1.75) ○ 상위 1%~100% (1.5)	(2.5)	
		- 유동비율 (최근 3년 평균)	○ 상위 10% 이내 (2.5) ○ 상위 11%~30% (2.25) ○ 상위 31%~70% (2.0) ○ 상위 71%~90% (1.75) ○ 상위 1%~100% (1.5)	(2.5)	
소 계				(10)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	단점	평가결과
5. 업무량과 여유	1) 사업책임기술자 (상 주)	○ 상위 10% 이내 (1.0) ○ 상위 11%~30% (1.25) ○ 상위 31%~70% (1.5) ○ 상위 71%~90% (1.75) ○ 상위 91%~100% (2.0)	(2.0)	
	2) 분야별 ① 중급기술자 (상 주)	○ 상위 10% 이내 (0.7) ○ 상위 11%~30% (0.9) ○ 상위 31%~70% (1.1) ○ 상위 71%~90% (1.3) ○ 상위 91%~100% (1.5)	(1.5)	
	기술자 ② 초급기술자 (상 주)	○ 상위 10% 이내 (0.7) ○ 상위 11%~30% (0.9) ○ 상위 31%~70% (1.1) ○ 상위 71%~90% (1.3) ○ 상위 91%~100% (1.5)	(1.5)	
소 계			(5)	
6. 전차용역관련	1) 전차용역업자	○ 용역완료일이 · 최근3년 이내 (10) · 3~5년 (7) · 5~10년 (5)	(10)	
	2) 전차용역사업 책임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 계직 (5) · 퇴직, 기타 (0)	(5)	
소 계			(15)	
합 계			(100)	

1994.

평가자

확인자

2. 배점산출기준

092 //

91

배점산출기준

1. 참여 기술자

가. 인원배치

구 분	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비상주 기술자	비고
계	6	1	4	1	

※ 상주 고급감리원은 건축시공(건축)에 한하여 평가

나. 배 점

구 분	배점합계	사업책임 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비상주 기술자
계	60	20	17	13	10
자격증 및 해당분야 경 력	40	12	10	8	10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 적	20	8	7	5	-

※ 배점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배점 적용

다. 세부 평가기준

1) 자격증 및 해당분야 경력

① 사업책임기술자 (12점)

경 력 기 간	15년 이상	10 이상	5년 이상	5년 이하
배 점	12	11	10	9

※ 고급기술자 등급에 해당되는자로 건축시공(건축)에 한하며 기본실무 경력을 제외하고 남은 경력기간에 대하여 평가

[기본실무 경력]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자격	실무경력	학위 등	실무경력
기사 1급 기사 2급	7년 이상 10년 이상	박 사 석 사 학 사 전 문 대 출	6년 이상 9년 이상 12년 이상

② 분야별기술자 (18점)

㉠ 중급 기술자 (10점)

경력기간	12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하
배 점	10	9	8	7

※ 중급감리원 등급에 해당되는 자만 평가하며 기본실무경력을 제외하고 남은 경력기간의 총합으로 평가

[기본실무 경력]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자격	실무경력	학위 등	실무경력
기사 1급 기사 2급	4년 이상 7년 이상	석 사 학 사 전 문 대 출 고	3년 이상 6년 이상 9년 이상 12년 이상

㉡ 초급 기술자 (8점)

경력기간	10년 이상	8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하
배 점	8	7	6	5	4

※ 초급감리원 등급에 해당되는 자만 평가하며 기본실무경력을 제외하고 남은 경력기간의 총합으로 평가

[기본실무 경력]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자격	실무경력	학위 등	실무경력
기사 1급 기사 2급	2년 이상	학사 전문대 졸 교	3년 이상 6년 이상

④ 비상주기술자 (10점)

경력기간	21년 이상	14년 이상	7년 이상	7년 이하
배 점	10	8.9	7.7	6.5

※ 건축시공 및 구조기술사에 한하며 기본실무경력(기사)을 제외한 경력기간의 총합으로 평가

2)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해당분야 감리경력으로 평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 감리, 감독에 참여한 실적 포함.

① 사업책임기술자

- 참여기간이 많은 순으로 상대평가

범 위	상위 10%이내	상위 11~30%	상위 31~70%	상위 71~90%	상위 91~100 %
점 수	8	7.5	7	6.5	6

② 분야별기술자 (12)

㉠ 중급기술자 (7)

- 참여기간이 많은 순으로 상대평가
- 해당분야 감리경력의 총합으로 상대평가

범 위	상위 10%이내	상위 11~30%	상위 31~70%	상위 71~90%	상위 91~100 %
점 수	7	6.5	6	5.5	5

㉠ 초급기술자 (5)

- 참여기간이 많은 순으로 상대평가

범 위	상위 10%이내	상위 11~30%	상위 31~70%	상위 71~90%	상위 91~100 %
점 수	5	4.5	4	3.5	3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91~'93)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공사 분야 감리용역만 실적으로 평가
- 수행건수가 많은 순으로 평가

범 위	상위 10% 이내	상위 11~ 30 %	상위 31~ 70 %	상위 71~ 90 %	상위 91~100 %
점 수	10	9	8	7	6

3. 신용도

1)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5점)

-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예산회계법령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지 정 기 간	없 으 면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점 수	5	2	0

2) 재정상태 건실도 (5점)

① 자기자본비율 (2.5점)

- 자기자본비율이 높은순으로 상대평가
- 최근 3년간('91~'93)의 평균치를 구하여 상대평가

범 위	상위 10% 이내	상위 11~ 30 %	상위 31~ 70 %	상위 71~ 90 %	상위 91~100 %
점 수	2.5	2.25	2	1.75	1.5

② 유동비율 (2.5점)

- 유동비율이 높은순으로 상대평가
- 최근 3년간('91~'93)의 평균치를 구하여 상대평가

범 위	상위 10% 이내	상위 11~ 30 %	상위 31~ 70 %	상위 71~ 90 %	상위 91~100 %
점 수	2.5	2.25	2	1.75	1.5

4. 업무량과 여유

1) 사업책임기술자 (2)

-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다른용역참여에 대한 상대평가
- 다른용역 나머지 참여기간×건수의 총합

범 위	상위 10% 이내	상위 11~ 30 %	상위 31~ 70 %	상위 71~ 90 %	상위 91~100 %
점 수	1.0	1.25	1.5	1.75	2.0

2) 분야별 책임기술자 (3)

① 중급기술자 (1.5)

-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다른용역참여에 대한 상대평가
- 다른용역 나머지 참여기간×건수의 총합

범 위	상위 10% 이내	상위 11~ 30 %	상위 31~ 70 %	상위 71~ 90 %	상위 91~100 %
점 수	0.7	0.9	1.1	1.3	1.5

② 초급기술자 (1.5)

-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다른용역참여에 대한 상대평가
- 다른용역 나머지 참여기간×건수의 총합

범 위	상위 10% 이내	상위 11~ 30 %	상위 31~ 70 %	상위 71~ 90 %	상위 91~100 %
점 수	0.7	0.9	1.1	1.3	1.5

5. 전차용역관련

1) 전차용역업자

- 용역완료일 기준으로

용역완료일	최근3년 이내	최근3~5년이내	최근 5~10년 이내
점 수	10	7	5

2) 전차용역사업 책임기술자

- 전차용역 당시 사업책임기술자의 재직여부에 따라

재 직 여 부	재 직	퇴 직 · 기 타
점 수	5	0

3.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 참여신청서

099



전면책임감리 용역 수행참여 신청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명칭				2) 설립일자			
	3) 주된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사업내용		(1) (2) (3)					
	6) 자본금							
	7) 기업의 유형 (해당란에 V 표시)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8) 연간매출액 ('93년도)			
감 리 활 동 주	9) 명칭				10) 설립일자			
	11) 주요 활동		(1) (2) (3)					
	직원	12) 총원		13) 고급 기술인력	명	14) 기타 기술인력	명	
	건물	15) 소유형태 (해당란에 V 표시)	<input type="checkbox"/> 신청인소유 <input type="checkbox"/> 임차사용	16) 독립여부	<input type="checkbox"/> 독립건물 <input type="checkbox"/> 분리구역	17) 면적		㎡ (평)
	18) 최근3년 이내 유사용역사업 수행 실적				외		건	
경 영 능 력	19) 예산회계법등의 규정에 따라 부청당업자로 지정되어 최근3년 간 입찰참가 제한기간중인지의 여부(해당란에 V 표시)		<input type="checkbox"/> 입찰참가 제한 기간		20) 제한기간			
			<input type="checkbox"/> 입찰참가 제한기간중아 아님					
	구분		'91	'92	'93	평균		
	21) 총 자산							
	22) 유동자산							
	23) 유동부채							
	24) 자기자본							
25) 자기자본비율								
26) 유동비율								

업무 참여유	27) 성 명	28) 용 역 명	29) 용역기간	30) 참여직위	31) 발 주 처
전차 용역 수행	32) 사 업 명	33) 사 업 기 간	34) 계 약 금 액	35) 발 주 처	
36) 사업책임기술자 재직여부(해당란에 V 표시)			<input type="checkbox"/> 재직중임 <input type="checkbox"/> 퇴직,기타		
<p>위와 같이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업무 참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4. . 신 청 인 (인</p>					
<p>구비서류 : 1.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인이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참여예정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각1부. 4. 신청인이 최근 3년간('91~'93) 감리용역사업수행 실적자료 1부. 5. '91~'93 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 부. 6. 전차용역 관련자료 1부.</p>					

4.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참여 신청안내
및 신청서 작성지침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참여 신청안내

1. 과업명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2. 사업의 목적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제반 시방서 및 사양서등 규정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 공정관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함.

3. 감리대상

가. 공사명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나. 공사개요

-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 7,143.72㎡
- 주요시설 :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독서실, 탁아소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순공사비 : 7,327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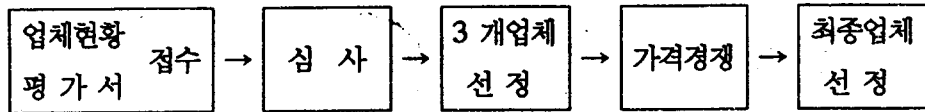
라. 감리기간 : '94. 12 ~ '96. 6 (19개월)

4. 주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5. 업체선정방법

가. 원 칙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에 의한 (P.Q 방식 채택)

나. 선정절차



※ 신청자가 3명 이하인 경우는 가격경쟁으로 최종 업체를 선정하며 상위 3위이내
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동점자 모두를 입찰에 참여시킨다.

다. 평가대상

- 1) 참여기술자 : 자격증 및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
-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3) 신용도 :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재정상태 건설도
- 4) 업무량과 여유

다.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이 심사

마. 선정업체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참가 대상업체

- 전면책임감리업체로서 종합환경 용역업 등록업체
-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참여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로서 효과적인 용역수행을위해 업체선정을 위한 지침이므로 본 지침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994. 11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시설부
- 제출서류 :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참여 신청서 1부.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접수 (수신 :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참조 : 시설부장)

2. 신청서 작성요령

가. 신청인

1) 7)란의 기업유형은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감리활동 주체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교부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13)란의 고급기술인력은 감리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1급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포함)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의 총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18)란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91~'93)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공사 감리실적을 구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첨부)

다. 경영능력

- 1) 20)란은 예산회계법령등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로 부터 3년 이내에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기간을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2) 21)~26)란은 '91~'93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업무량과 여유

- 1) 참여예정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용역사업 대한 나머지 과업참여기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별)

마. 전차용역 수행

- 1) 본 공사와 관련된 기본용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첨부
- 2) 36) 사업책임기술자 재직여부는 기본용역 당시의 책임기술자의 공고일현재 재직여부를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기타사항

- 가.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 나.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임의 처리 합니다.
-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력이 있는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의 증빙서류는 인정치 않습니다.

첨부 : 양식 1.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별지1호 서식)
2.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별지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상호 또는 명칭 :

영업소의 소재지 :

성명 (대표자) :

감리종류 :

등록연월일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부장관 인

30307 - 05411일
'93.12.17 승인

210 mm × 297 mm
인쇄용지 2급 60 g/m²

107

26

206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코드									
성명 (한자)				생년 월일	19년 월 일	주민등록 번호			
주소									
기술자격종목					자격번호				
학 력	학교명	학과명	졸업년도	학 위					
보 수 교 육 이 수									
교육과정별		교육기관		교육기간		수료증번호			
상 별 사 항									
종류	기관명	일자	사 유			비 고			

주요 경력 사항						
근무기간	근무처명		공사 현장	발 주 처 사 업 - 명	담당 분야	비 고 (특기사항)
	직	위				
~						
~						
~						
~						
~						
~						
~						
~						
~						
~						
~						
~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사항을 확인함.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 장 (인)

20

[별지 제2호서식]

전면책임감리 직접 투입 예정기술자 이력서

일 반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자 격 증					
				종 류	취 득 일				
본 과업 참여 직위 및 분야		최종학교 (학위)	전 공	경 력					
				총 년 수	해당분야 년수				
			년	년					
경 력 사 항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및 용역금액	참여기간 월 년	담당업무	참여직위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속	직위		

- 대상 : 상급 기술자 - 직접투입 예정 기술자
- 자격증은 증명서류 첨부
- 구분란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로 구분 기재
- 참여기간에는 개인별 실제 참여기간 기재
- 참여직위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용역경력 기재

5. 과업지시서 (안)

111

30

110

과업지시서 (안)

1. 사업명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2. 목 적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제반 시방서 및 사양서등 규정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 공정관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함.

3. 감리대상 공사현황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시설비 (예산)	공사기간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 7,143.72㎡ - 주요시설 ·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사우나, 노인정, 탁아소 · 청소년수련시설	8,060 백만원	'94.12~ '96. 6 (19개월)

4. 감리기간 : '94. 12 ~ '96. 6 (19개월)

※ 공사준공여부에 따라 변경할수있다.

5. 감리 업무범위

-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에 규정된 업무
-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감리원의 업무등)에 규정된 업무
- 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
- 라. 건설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정한 업무
- 마. 기타, 공사에 관하여 청소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별표 1)

6. 과업지시내용

가. 일반사항

- 1) 본 과업은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서 도급자는 본 과업의 지시와 관련법령, 규정, 지침, 시방서 및 사양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 2)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감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소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수행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과업추진방향 및 계획
 - 나) 감리단 구성
 - 총괄 관리하는 책임감리원을 선임하여 상근케 한다.
 - 도급자는 감리단을 총괄관리하는 책임감리원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공사경험, 실적등을 확인한 후 청소사업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원은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행한다.
 - 감리단 구성은 별첨 1 참조

- 도급자는 현장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에 대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소사업본부는 감리단 구성원중 그 임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자가 있을경우 이의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 가) 감리회사는 공정관리 관련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전담배치토록 한다.
- 나)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시공자의 예정공정표를 구체적으로 점검, 검토, 보완조정 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는 공정계획(PERT/CPM)을 수립 하여 청소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공사기간중 공정의 변경이 있을시는 시공자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본 공정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소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록작성보고 및 관리

- 가) 책임감리원은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매월말일 기준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청소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책임감리원은 다음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비치하고 .청소사업본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출근부
 - 근무 상황부
 - 감리일지
 - 명령부

- 지시부
- 발생품 정리부
- 공사 기록부
- 지급자재 수발부
- 기자재 품질검수부
- 품질시험 계획서 및 시험실적 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 품질시험대장
- 공정표 및 공정보고철
- 공법검토등 기술적 검토사항
- 품질시험 관리표
- 관계관 회의록
- 매물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 공사 사진첩
- 공사 측량결과
- 반입자재 검사부
- 천후표, 온도표
- 각종보고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5) 기 타

- 가) 책임감리자는 근린생활시설 및운동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선정하되 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은 감리자의 소속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검토서를 작성토록 하여 해당 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책임감리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지정장소에 반출 여부등을 확인하고, 반출확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비상주감리원의 업무 및 배치기준

- 가. 청소사업본부에서 요청시 또는 감리업무 수행중 필요시 각분야별로 비상주감리(공정 및 안전분야 제외)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감리수행계획서상 현장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청소사업본부의 조정요청이 있을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상주감리원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다.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중 다른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 라.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 비상주감리원은 특급감리원 자격 이상인 자로 한다.

2) 분기보고서 제출

- 가. 도급자는 매분기별 30일기준으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고 익월 10일 이내에 청소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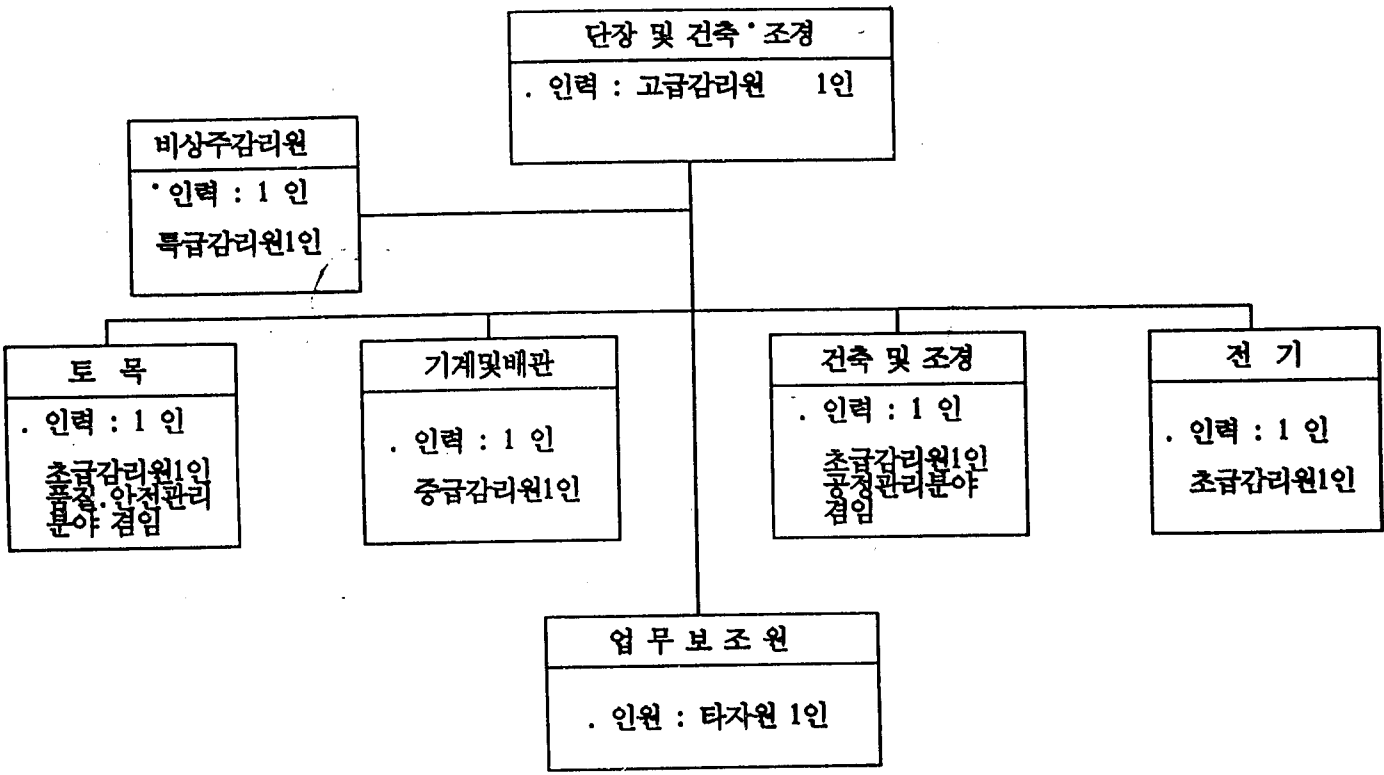
단계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비고
			발주처	감리원	시공자	
공사계획			입안			
설계	- 용역발주	- 용역감독	○			
	- 용역준공	- 설계도서, 용지도등 납품	○			
	- 공사발주설계	- 설계도서 작성	○			
공사발주	- 발주의뢰	- 발주기관	○			
	- 공고	- 발주기관, 조달청	○			
	- 시공자 및 감리회사 선정	- 도급계약 또는 감리용 역 계약체결	○	○	○	
공사착공	- 용지보상	- 용역성과품 활용	○	○		주민
		- 기본조사	○	○		
		- 용지측량 및 편입용지 경계설치	○	○	○	
		- 분할측량 및 감정의뢰	○			
		- 보상협의	○			
		- 기공승락 청구	○	○	○	
		-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	○		
인·허가 사항	- 일반 인·허 가	- 사업수행 인·허가	○	○		
		- 공사시공 인·허가	협조	○	○	
공사시행	- 시공관리	- 시공측량 입회, 확인		○	측량	
		- 시공계획 검토, 확인		○	작성	
		- 시공도서 검토, 확인		○	작성	

단 계 별	업 무 중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비고
			발주처	감리원	시공자	
공사시행	- 시공관리	- 시공검측, 확인 - 사용자제, 재료검사 및 시험입회 확인 - 품질관리 시험 및 성과 분석 입회, 확인 - 안전점검사항 검토, 확인 - 현장실정보고 및 확인	필요시 확인	○ ○ ○ ○ ○	시공 시험 시행 시행 작성	
	- 시공지시	- 시공중지 - 재시공 지시	확인 확인	○ ○		
	- 공정관리	- 공정계획, 검토, 확인 - 공정작성보고 - 공사추진상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필요시 확인	○ ○ ○	수립 작성 ○	
	- 설계변경	- 설계변경사항 조사 및 확인 - 기술검토 및 확인 - 현장실정보고 및 확인 - 설계변경도서 작성	확인 확인	○ ○ ○ ○	조사 ○	
	- 자재관리	- 자재품질 및 규격검토 - 자재검수 및 확인 - 수불처리 및 확인 - 공장출장 시험, 의뢰		○ ○ ○ ○	○ ○	
	- 민원처리	- 민원조사 및 처리	○	○	○	
	- 기성검사	- 기성검사원 지정 및 검사	필요시 확인	○	제출	

단계 별	업무종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비고
			발주처	감리원	시공자	
공사시행	- 부대행정	- 각종 정기, 수시보고 (공정, 자체사용, 민 원, 지시사항등)		○	○	
		- 하도급사항 검토, 처리 (불법하도급 방지등)	○	○		
		- 각종 대장정리(자재수 불대장, 송장, 발생품정 리부)	점검	○	○	
		- 각종 도표정리(공정표 천후표, 시험성과표등)		○	○	
		- 감리일지등 비치서류	점검	○		
준 공	- 준비	- 준공도서 검토, 확인 -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작성	확인	○	○	
	- 준공검사	-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확인 - 준공검사	검토 필요시 입회	○ ○ ○	제출	

감리단구성

63
39
44



감리인원투입계획

공사명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직종	년월일	개월	94		'95					'96		비고	
			12	3	6	9	12	3	6				
고급기술자	단장 (건축, 조경)	19											
중급기술자	기계	14											
초급기술자	토목	13											
	전기	13											
	건축	7											

221

40

감리기술자주요업무

직 종	직급	주 요 업 무	비 고
단 장	고급	- 감리 전반 총괄 및 건축·조경 설계검토와 시공감리	
기계감리원	중급	- 기계 및 배관공사 설계검토와 시공감리	
토목감리원	초급	- 토목공사 설계검토와 시공감리 및 품질·안전관리	
건축감리원	"	- 건축·조경공사 설계검토와 시공감리 및 공정관리	
전기감리원	"	- 전기공사 설계검토와 시공감리	

6. 감리용역 계약특수조건

123

42

12

감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 1 조 (선금의 지급)

-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그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자에게 선금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은 제외한다.
- ② 계약자는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채권양도등을 할 수 없다.
- ③ 선금급을 한 후 다음의 경우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자에게 선금잔액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을 타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3항의 이자상당액 계산은 매월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잔액의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의 계산기간은 청구시까지로 한다.
- ⑤ 계약담당자가 계약자에게 선금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로 채권확보조치를 취한 후 선금급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을 선금급일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을 계약기간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계약자는 선금에 대하여 기성부분의 대가 수령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계약담당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text{선금 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제 2 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 ① 계약자는 본 용역계약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용역을 완료할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연대보증인은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 3 조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담당자는 본 용역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시 원가계산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감리용역비보다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② 계약종결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가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후 12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을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 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30일 이상의 공사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4.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감리중인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내용이 변동없이 신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서면상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 5 조 (착공신고 등)

-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전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에게 감리업무에 부적합한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당사업이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될 경우는 착수시기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기 할 수 있다.

제 6 조 (감리용역의 중지)

-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0일전에 계약해제·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일이 경과한 후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1. 계약담당자가 계약자(감리원 포함)의 부실용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상당기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 2. 계약담당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 3.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 ②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정한 기일내에 지불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 2. 계약자가 계약서상의 업무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6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제 7 조 (서면통지)

본 계약서상의 모든 통지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인편, 우편, 전보(Telex, Telegram Fax)의 방법등의 하나로 송달될 경우에는 적합하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 8 조 (발굴물의 처리)

- ① 감리용역수행중 계약자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권,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② 계약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하자보완책임)

- ① 계약자는 준공감사를 한 날로부터 1년간 본 과업의 하자보완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감사후 대금청구시까지 현금 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을 하자보완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의 도래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인정할 때에는 보완책임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계약자는 공사준공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자에게 있는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보안대책)

- ①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국가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감리용역담당직원의 지시 및 과업지시서등에 의거 보안대책을 수립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리용역착수시 대표자 및 감리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용역과업 수행중이거나 과업수행 완료후 그리고 소속회사의 재직중은 물론 퇴사후에도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자가 고용하고 있는 용역참여자자 역시 계약자와 같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계약자 본인은 고용하고 있는 용역참여자가 만약 이를 누설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배하였을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 ④ 계약자는 감리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토록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감리원의 업무등)

- ① 감리원의 업무 및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감리업무과업지시서 및 본 계약조건에 의한다.
- ② 감리원은 그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중지토록 하거나 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 1.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 2.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잘못시공된 것이 확인된 경우
 - 3.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③ 감리원은 공사가 지연되어 기한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감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특허권의 사용)

감리용역의 수행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전문기술의 제공)

계약담당자가 감리용역의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다음 과업에 대하여는 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3. 해외 및 원격지출장여비 및 장비
4. 설계자 외국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제 14 조 (계약자의 책임등)

- ① 본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는 그 직원, 하도급인 또는 계약의 양수인이 수행하는 감리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송, 청구, 의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보상하고 계약담당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② 계약자는 특별한 전문기술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감리업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일반적인 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 15 조 (책임감리원등)

- ① 계약자는 소속 감리원중에서 감리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를 대표하고 감리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계약자의 명백한 반대취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책임감리원의 의사표시는 계약자의 의사로 본다
- ③ 계약담당자는 용역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감리원의 교체를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하고 감리원 교체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 ① 계약자는 당해공사 시공자가 기성부분이나 준공에 대한 검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 중 고급감리원 이상인 자를 검사원으로 임명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계약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1항의 검사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토록 하고, 기술적 특수성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계약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 지체없이 공사시공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계약담당자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장비의 반환)

- ① 계약담당자가 제공하거나 그의 자금으로 계약자가 구입한 장비, 자재 및 자료는 계약담당자의 소유로서 계약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계약자는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종료 상태대로 전항의 장비, 자재 및 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해금 수령금지)

계약자 또는 그의 고용자는 본 계약금액 이외에는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 부터 수수료, 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원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제 19 조 (배상책임)

- ① 계약 완료후에라도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계약자가 수행한 과업수행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계약담당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20 조 (계약자의 수감의무)

- ① 계약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의 부재시에는 보조감리원으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자는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 21 조 (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 ① 계약담당자는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자는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계약담당자가 시공회사에게 지시한 사항이나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계약담당자는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이를 시정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 (담당직원의 지정)

- ① 계약담당자는 감리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담당직원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또한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 ③ 계약담당자는 담당직원을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23 조 (결정의 통지)

계약담당자는 감리자의 용역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계약자가 제출한 권고안, 보고안, 도면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대외적 협력)

계약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시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자료 등의 제공)

- ① 계약담당자는 본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이하 "자료등" 이라 한다)와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등을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26 조 (분쟁)

-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으로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예산회계법,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27 조 (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감리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감리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감리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 28 조 (기 타)

- ① 현장상주감리원은 현장에 출근부 및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출근시 날인 및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확인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정추진상 정상 일과시간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공휴일 또는 시간외 작업이나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도 계약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초과근무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평일정상 일과시간에 교대로 휴무토록 하고 이로인한 대가를 시행청이나 시공자가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초과근무에 상당하는 만큼 평일휴무하는 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계약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내역서 및 책임감리비 산출내역

133

52

432

주 장	원 계 과 장	심 사 자	설 계 자	설 계 심 사	199 년 월 일	199 년 월 일	결 계 월 일	재 계 월 일
-----	---------	-------	-------	---------	-----------	-----------	---------	---------

지원과장

설 계 서

공 사 명 :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구	분	금	액	비	고
총	공 사 비				
도 급 비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				
	계				
관	급 비				
이	전 비 및 기타				

공사 개요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7,143.72㎡
- 주요시설 :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사우나, 탁아소, 노인정 및 청소년수련시설

133
53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총괄내역서												
1. 상주 기술자		1	식									
2. 비상주 기술자		1	"									
3. 제 경비		1	"									
4. 기술료		1	"									
5. 직접 경비		1	"									
합계												

134

135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내 역 서												
상주 기술자												
고급기술자		19	인월									
중급기술자		14	"									
초급기술자		33	"									
소 계												
2. 비상주 기술자		1	식									
3. 제 경 비		1	"									
4. 기 술 료		1	"									
직접 경비												
주 재 비		1	"									
출장 여비		1	"									
차량운행비	1대	19	월									
사 무 원	1인	19	"									
도서인쇄비		1	식									
소 계												

135
22